

영등포구의회
제146회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2009. 7. 3.



行 政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■ 개정이유

-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,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로 조정하는 등 개정된 「주민투표법」 내용에 따라 정비하고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’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■ 주요내용

- 안 제2조에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행하여 표기하도록 함
- 안 제3조에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을 반영함
- 안 제8조, 제9조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, 체류지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

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 「주민투표법」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」 중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한 관련정보 제공 규정을 안 제2조제4항에 신설하였고
 - 안 제3조에는 주민투표권자를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며
 -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거소 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주소, 체류지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며
 - 그 밖에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.
-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「주민투표법」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, 별지서식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“참고” 란을 “작성요령” 으로 변경하여 주민이 쉽게 표기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요령을 규정하였다고 보이며, 조례 내용 일부를 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”에 의거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반, 저촉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9. 7. 3.

보고자 : 권 오 운

관 계 법 령

■ 주민투표법

제2조 (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)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[제5조제1항](#)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신설 2009.2.12>

제5조 (주민투표권)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[제6조제1항](#)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. 다만, 「[공직선거법](#)」 [제18조](#)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. <개정 2009.2.12>

1.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「[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](#)」 [제6조](#)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

2.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(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

제9조 (주민투표의 실시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19세 이상 주민 중 [제5조제1항](#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"주민투표청구권자"라 한다)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09.2.12>